|  |  |  |
| --- | --- | --- |
| **가격 위법행위 고발처리 규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6호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의거, <가격 위법행위 고발규정>(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15호)을 수정하였다. 수정 후의 <가격 위법행위 고발처리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사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이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임: 서소사  2014년 1월 15일  **제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에 의한 가격 위법행위 고발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주관부처의 가격 위법행위 고발에 대한 수리, 처리, 고지 등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및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고발인”으로 약칭)이 가격 및 비용 수취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기타 규범성문건 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가격 주관부처에 고발(이하 “가격 고발”로 약칭)하고, 가격 주관부처가 가격 고발을 처리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처는 사회에 12358 고발전화, 인터넷 고발 플랫폼, 통신주소, 접수시간 및 장소 등 관련 사항을 공포해야 한다.  **제4조** 고발인은 12358 고발전화, 서신, 인터넷, 팩스, 방문 등 형식으로 가격 주관부처에 가격 고발을 할 수 있다.  구두형식으로 가격 고발을 하는 경우, 가격 주관부처가 기록해야 한다.  복수고발자가 방문형식으로 공동 고발하는 사항의 경우, 대표를 추천 선발해야 한다.  **제5조** 가격 주관부처는 전국 통일의 가격 고발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 고발에 대한 통일적인 번호 관리를 시행한다.  고발인은 고발번호를 사용하여 고발의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번호관리 및 조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가격 고발 관리정보시스템 업무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발의 경우, 가격 주관부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고발사항이 가격 주관부처의 직권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확한 피고발인의 성명(명칭), 주소가 없는 경우  (3) 피고발되는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리한 경우  (5)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나 고발인이 고발하고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7조** 가격 주관부처는 고발을 접수한 후 응당 적시에 심사를 진행한다. 접수된 고발이 가격 주관부처의 관할 범위에 해당하고, 본 규정 제6조 제(2), (3), (4), (5)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접수된 고발이 가격 주관부처의 관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당 7업무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가격 주관부처에 이관시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관 접수한 가격 주관부처는 접수한 가격 고발에 대하여 즉시 심사를 진행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가격 주관부처는 고발을 접수한 날로부터 7업무일 이내에 고발자에게 수리여부 또는 이관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제9조** 가격 주관부처는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관할과 관련하여 <가격 행정처벌 절차 결정> 제2장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행정처벌 관할 업무분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서면형식으로 가격 고발을 하고 동시에 유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가격 주관부처가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격 주관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를 조사한 후 <가격 행정처벌 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행정 미처벌, 유관 행정기관으로 이송 처리 등의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입안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발사항을 종결한다.  **제11조** 가격 주관부처는 고발 종결 후 15업무일 이내에 고발자에게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제12조** 생활소비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는 단독으로 또는 가격 고발을 할 때 동시에 자신의 가격 권익과 관련된 민사 분쟁을 고소(이하 “가격고소”로 약칭) 할 수 있다.  가격고소는 분쟁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본인 신분증명, 민사청구사항 및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격 고발과 동시에 가격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격고소는 가격 고발을 수리한 가격 주관부처가 관할한다. 소비자가 단독으로 가격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발생지의 시, 현 가격 주관부처가 관할한다.  가격 주관부처는 소비자의 가격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업무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가격 주관부처는 가격고소에 대한 조정제도를 시행하며, 조정은 당사자 쌍방간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고소를 종결한다.  (1)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2) 조정기간에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여 화해하는 경우  (3) 소비자가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5) 쌍방이 조정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6) 가격고소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기타 상황의 경우  가격고소는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조정협의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 중재 등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 피고발인의 가격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대금을 과다 지불하게 된 경우, 가격 주관부처는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고발인이 소비자에게 과다수취한 대금을 반환하도록 책임지고 명령해야 한다. 단, 가격고소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이미 반환한 과다수취 대금은 공제해야 한다.  **제15조** 가격 주관부처는 구두 또는 서면형식(데이터 전보문 형식을 포함함)으로 본 규정에서 정한 고지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고발자 또는 소비자 성명(명칭),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연락방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 유관 기록을 해야 한다.  **제16조** 가격 주관부처는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유관 규정에 부합하는 고발인에게 장려혜택을 부여한다.  **제17조** 가격 주관부처는 사회적 영향이 큰 가격 고발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를 사회에 발표한다.  **제18조** 가격독점행위 혐의가 있는 고발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및 <반가격 독점 행정 법이행 절차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9조** 가격 법률, 법규, 규장, 정책 조회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처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 본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22조**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8월 10일에 발표한 <가격 위법행위 고발규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  | **价格违法行为举报处理规定**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第6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我们对《价格违法行为举报规定》（国家发展改革委令第15号）进行了修订，修订后的《价格违法行为举报处理规定》已经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主任办公会议讨论通过，现予公布，自2014年5月1日起施行。  主任：徐绍史  2014年1月15日  **第一条** 为保障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举报价格违法行为的权利，规范价格主管部门对价格违法行为举报的受理、办理、告知等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及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以下简称举报人）对违反价格和收费法律、法规、规章和其他规范性文件规定的行为向价格主管部门举报（以下简称价格举报），价格主管部门处理价格举报，适用本规定。  **第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应当向社会公布12358举报电话、网上举报平台、通讯地址、接待的时间和地点等相关事项。  **第四条** 举报人可以通过12358举报电话、信件、互联网、传真、走访等形式向价格主管部门提出价格举报。  对采用口头方式提出价格举报的，价格主管部门应当记录。  多人采用走访形式提出共同的举报事项的，应当推选代表。  **第五条** 价格主管部门建立全国统一的价格举报管理信息系统，对价格举报实行统一编码管理。  举报人可以凭举报编码查询举报处理进展情况。  具体编码管理及查询办法按照价格举报管理信息系统工作规则执行。  **第六条** 举报有下列情形之一的，价格主管部门不予受理：  （一）举报事项不属于价格主管部门职权范围的；  （二）没有明确的被举报人的姓名（名称）、地址的；  （三）没有提供被举报的价格违法行为的具体事实的；  （四）对同一个价格违法行为的举报，其他机关已经受理的；  （五）对被举报的价格违法行为已经作出处理决定，举报人提出举报，但没有提供新的事实的。  **第七条** 价格主管部门接收举报后应当及时进行审查，属于收到举报的价格主管部门管辖范围，并且不属于本规定第六条第（二）、（三）、（四）、（五）项情形的，予以受理；不属于收到举报的价格主管部门管辖范围的，应当在7个工作日内转至有管辖权的价格主管部门处理。  接受转办的价格主管部门对收到的价格举报，应当及时进行审查，决定是否受理。  **第八条** 价格主管部门应当自收到举报之日起7个工作日内告知举报人是否受理或者转办。  **第九条** 价格主管部门对被举报的价格违法行为的管辖，按照《价格行政处罚程序规定》第二章和各省、自治区、直辖市价格行政处罚管辖分工规定执行。  **第十条** 价格举报采用书面形式并提供相关证据的，价格主管部门可以优先进行处理。 价格主管部门依法对被举报的价格违法行为进行调查后，依据《价格行政处罚程序规定》的规定作出行政处罚、不予行政处罚、移送有关行政机关处理等决定或者不予立案的,为举报办结。  **第十一条** 价格主管部门应当在举报办结后 15 个工作日内告知举报人对被举报的价格违法行为的处理结果。  **第十二条** 因生活消费需要购买商品或者接受服务的消费者，可以单独或者在进行价格举报时一并对涉及自身价格权益的民事争议提出投诉（以下简称价格投诉）。  价格投诉应当在争议发生之日起一年内提出，并提供本人的身份证明、民事请求事项及相关证据。  消费者在价格举报时一并提出价格投诉的，价格投诉由受理价格举报的价格主管部门管辖。消费者单独提出价格投诉的，由争议发生地的市、县价格主管部门管辖。  价格主管部门应当自收到消费者价格投诉之日起7个工作日内，作出是否受理的决定并告知消费者。  **第十三条** 价格主管部门对价格投诉实行调解制度，调解应当在当事人双方同意的情况下进行。  有下列情形之一的，为价格投诉办结：  （一）达成调解协议的；  （二）调解期间双方自行协商和解的；  （三）消费者撤回投诉的；  （四）当事人一方拒绝调解的；  （五）双方未能达成调解协议的；  （六）应当视为价格投诉办结的其他情形。  价格投诉应当自受理之日起 60 日内办结，并告知消费者。当事人一方拒绝调解、未能达成调解协议或者不执行调解协议的，消费者可以通过民事诉讼、仲裁等方式维护自身合法权益。  **第十四条** 被举报人因价格违法行为致使消费者多付价款的，价格主管部门应当在对被举报的价格违法行为作出行政处罚决定前，责令被举报人将多收价款退还消费者，但应当扣除被举报人在价格投诉中已经退还的多收价款部分。  **第十五条** 本规定中的告知，价格主管部门可以采用口头或者书面形式（包括数据电文形式）进行，但举报人或者消费者姓名（名称）、地址不清或者未提供联系方式的除外。口头告知的，应当进行相关记录。  **第十六条** 价格主管部门应当为举报人保密，并对符合相关规定的举报人给予鼓励。  **第十七条** 对社会影响大的价格举报典型案例，价格主管部门可以向社会公布。  **第十八条** 对涉嫌价格垄断行为的举报，按照《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和《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的规定执行。  **第十九条** 咨询价格法律、法规、规章、政策，不适用本规定。  **第二十条** 各省、自治区、直辖市价格主管部门可以根据本规定制定实施细则。  **第二十一条** 本规定由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负责解释。  **第二十二条** 本规定自2014年5月1日起施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04年8月10日发布的《价格违法行为举报规定》同时废止。 |